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18. 3. 6.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본인은 대표이사로서 본 보고서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에 의거,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2018 년 3 월 6 일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원 종



목 차

제 1 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1. 지배구조 일반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
나. 지배구조 현황	1
1) 조직도	2
2) 지배구조의 특징	2
3) 지배구조 현황(요약)	2
다. 관련 규정	3
2. 이사회	3
가. 역할(권한과 책임)	3
1) 총괄	3
2) 구체적 역할	3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4
나) 정관 변경	4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4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5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5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6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6
나. 구성(이사)	6
1) 총괄	6
2) 구성원	7
가) 이사회 의장	7
나) 이사	7
3) 요약	9
다. 활동내역	9
1) 활동내역 개요	9
2) 회의 개최내역	10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2
1) 이사회 평가	12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12
마.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12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3
가. 역할(권한과 책임)	13
나. 구성	13

다. 선임기준	13
1) 후보 자격요건	13
2) 후보 추천 절차	13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14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4
1) 활동내역 개요	14
2) 회의 개최내역	14
3) 평가	15
마. 사외이사후보 추천 관련사항	15
1) 사외이사 후보	15
가) 후보자 인적사항	15
(1) 성명	15
(2) 출생연도	15
(3) 출신학교	15
(4) 경력	16
(5) 사외이사 경력	16
나) 후보 제안자	17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17
(2) 후보자와의 관계	17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7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17
(2) 후보자 추천경로	18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18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9
(1) 소극적 요건	19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19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20
(4) 본인 소명	21
바) 사외이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22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2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3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25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25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25
바.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25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25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25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25

가)	이사회.....	25
나)	사외이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	25
다)	감사위원회.....	26
라)	위험관리위원회.....	27
마)	보수위원회.....	28
바)	기타 위원회.....	28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28
가)	활동내역.....	28
(1)	사외이사 심재우.....	28
(2)	사외이사 이봉연.....	29
(3)	사외이사 조진완.....	29
(4)	사외이사 한동엽.....	29
나)	요약.....	29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29
다.	사외이사 교육 연수.....	30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30
1)	사외이사 심재우.....	30
가)	소극적 자격요건.....	30
나)	적극적 자격요건.....	30
다)	요약.....	30
2)	사외이사 이봉연.....	30
가)	소극적 자격요건.....	30
나)	적극적 자격요건.....	31
다)	요약.....	31
3)	사외이사 조진완.....	31
가)	소극적 자격요건.....	31
나)	적극적 자격요건.....	31
다)	요약.....	31
4)	사외이사 한동엽.....	32
가)	소극적 자격요건.....	32
나)	적극적 자격요건.....	32
다)	요약.....	32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33
바.	사외이사 평가.....	33
1)	평가 개요.....	33
2)	내부평가.....	33
가)	내부평가 개요.....	33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33
(1)	총론.....	33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33
3) 외부평가.....	34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34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34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34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34
1) 사외이사 심재우.....	34
가) 재직기간.....	34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34
2) 사외이사 이봉연.....	35
가) 재직기간.....	35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35
3) 사외이사 조진완.....	35
가) 재직기간.....	35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35
4) 사외이사 한동엽.....	36
가) 재직기간.....	36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36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36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36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37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37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37
1) 일반.....	37
2) 비상계획.....	37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37
1) 소극적 요건.....	37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38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38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38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38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38
3) 후보군 현황.....	38
바. 이사회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38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39
6. 감사위원회.....	39
가. 역할(권한과 책무).....	39
1) 총괄.....	39

2) 구체적 역할	39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9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39
다) 재무제표 검토 등	39
라)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40
마)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인의 선임	40
나. 구성(감사위원회)	40
1) 총괄	40
2) 구성원	40
다. 활동내역 및 평가	41
1) 활동내역 개요	41
2) 회의 개최내역	41
3) 평가	42
라. 감사보조조직 등	42
7. 위험관리위원회	42
가. 역할(권한과 책무)	42
1) 총괄	42
2) 구체적 역할	43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43
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43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3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43
마) 기타	43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 위원)	43
1) 총괄	43
2) 구성원	44
다. 활동내역 및 평가	44
1) 활동내역 개요	44
2) 회의 개최내역	44
3) 평가	45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45
가. 경영유의사항	46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46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46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46

1. 보수위원회	46
가. 총괄	46
나. 구성	47
1) 총괄	47
2) 구성원	47
다. 권한과 책임	47
1) 총괄	47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48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48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48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49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49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49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49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50
10)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 제외)의 결정	50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50
1) 의사결정 절차	50
2) 활동내역 개요	51
3) 회의 개최내역	51
4) 평가	51
2. 보수체계	52
가. 주요사항	52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52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52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52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52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53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53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53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53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53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53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54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54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54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54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54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54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55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55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55
나. 보수 세부사항	55
1) 임직원 총보수 (해당연도 실제 지급액기준).....	55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해당연도 실제 지급액 기준).....	55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56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56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56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57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57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58
6) 이연보수의 조정	58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59
.....	

첨부 1: 정관

첨부 2: 지배구조내부규범

첨부 3: 감사위원회규정

첨부 4: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첨부 5: 보수위원회규정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과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017 년말 현재, 총 7 인의 이사회 구성원 중 4 인이 사외이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 받지 않은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하여,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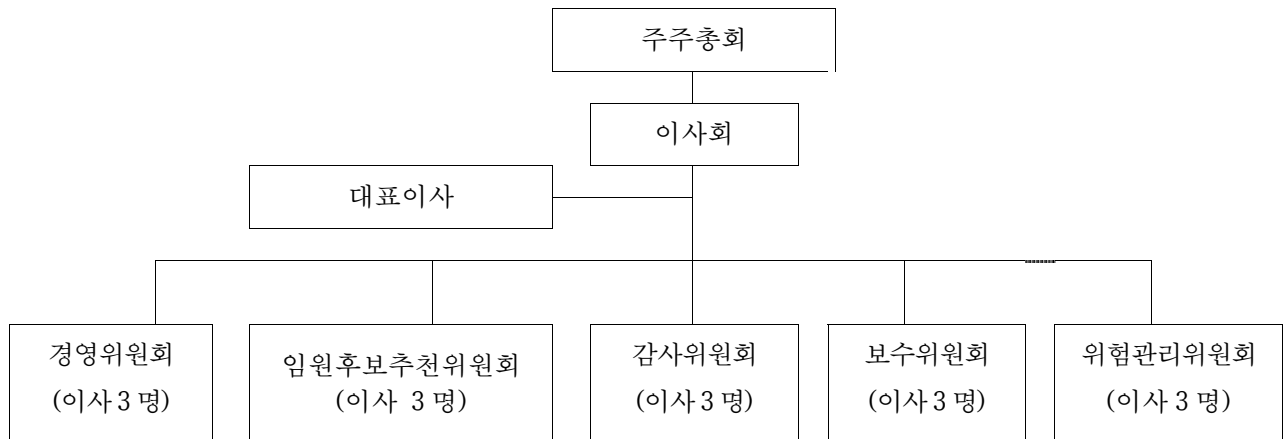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 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현황 및 이사회 등 주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수시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홈페이지의 회사정보 및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www.ubs-hana.com)

회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정착을 통하여 경영환경 및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지배구조의 원칙과 정책에 대하여 매년 적정성을 평가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 지배구조의 특징

2017 년 말 현재, 총 7 명의 등기이사 중 4 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주인 UBS AG 및 하나금융투자(주)의 주주간 계약에 의거, 이사회 의장으로 사내이사가 선임되어 있으며, 2017.3.27. 이사회에서는 심재우 사외이사를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경영위원회, 임원 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 성 (사외이사수/구성원수)	의 장 (이름/상임·비상임,사 내·사외)	관 련 규 정
이사회	회사 의사결정기구	4/7	이원종/상임·사내 (심재우 선임사외 이사/비상임·사외)	지배구조법 제 12 조 및 제 13 조 정관 제 5 장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5 조, 제 6 조
경영위원회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및 재무 등 에 관한 사항 결 의	0/3	이원종/상임·사내	정관 제 42 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16 조 및 제 17 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	2/3	한동엽/비상임·사 외	지배구조법 제 16 조 및 제 18 조 정관 제 42 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16 조 및 제 18 조
감사위원회	회사의 회계와 업	3/3	심재우/비상임·사	지배구조법 제 16 조 및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 성 (사외이사수/구성원수)	의 장 (이름/상임·비상임,사 내·사외)	관 련 규 정
	무 감사		외	제 20 조 정관 제 42 조 및 제 6 장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16 조 및 제 19 조
위험관리위원회	회사 위험관리 기 구	2/3	이봉연/비상임·사 외	지배구조법제 16 조 및 제 21 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16 조 및 제 21 조
보수위원회	임직원 보수체제 에 관한 사항 승 인	2/3	조진완/비상임·사 외	지배구조법 제 16 조 및 제 22 조 정관 제 42 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16 조 및 제 20 조

다. 관련 규정

- 첨부 1. 회사 정관
- 첨부 2. 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
- 첨부 3.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 4. 위험관리위원회규정
- 첨부 5. 보수위원회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회사의 이사회는 건전 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에 대한 승인 및 평가를 합니다. 경영목표·전략 관련한 실무업무는 회사의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이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정관 제 39 조제 2 항제 1 호)

나) 정관 변경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 안을 심의·결의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제 1 항 제 2 호, 정관 제 39 조 제 2 항 제 2 호)

회사는 2017 년 6 월 8 일 개최된 제 2017 년 제 3 차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의 하였고, 2017 년 7 월 3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관 변경을 하였습니다.

- 아 래 -

정관 변경 대비표 (2017.7.3)

변경 전	변경 후
제 43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3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u>관련 법령 및 인사관련 제 내규에서</u> <u>정한 바에 따른다.</u>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2012 년 6 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폐지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이사회는 회사의 결산 및 예산 안을 승인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3 호, 정관 제 39 조 제 2 항 제 3 호) 구체적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업무집행책임자는 2017 년 1 월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고, 2017 년 2 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에 보고했으며, 2017.2.13. 개최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 2016 회계연도: 2016.1.1 ~ 2016.12.31.
- 영업수익: 315 억원
- 영업비용: 173 억원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44 억원
- 당기순이익: 111 억원
- 현금배당: 101 억원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영업양수도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4 호, 정관 제 39 조 제 2 항 제 4 호)

2017 년 9 월 18 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회사의 2 대주주인 하나금융투자(주)가 최대주주인 UBS AG 가 보유한 회사지분 51% 모두를 취득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습니다. (정관 제 9 조의 2 및 제 40 조의 2 제 15 호)

또한, 본부신설·폐지 등 회사 조직의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의 조직 변경 내용은 2017 년에는 2.13. 이사회, 6.8. 이사회, 9.18. 이사회, 12. 27. 이사회에 보고되었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5 호, 정관 제 39 조 제 2 항 제 5 호)

2017 년 12 월 27 일 이사회에서는 위험관리기준 개정 및 단기집합투자기구위험관리기준 제정의 건이 추인되었습니다.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6 호, 정관 제 39 조 제 2 항 제 6 호)

2017 년 회사의 이사 선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외이사 조운제, 심재우, 오재환, 이봉연의 임기 만료에 따라 2017. 3.27. 정기주주총회에서 심재우(중임), 이봉연(중임), 조진완 (신임), 한동엽(신임)을 2017.3.27.부터 2018 년 정기주주총회일 까지를 임기로 하여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사내이사 김영철의 임기가 2017.3.31.에 만료됨에 따라, 동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종영을 2017.4.1.부터 2018.3.31.까지를 임기로 하여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내이사 레네부엘만의 임기가 2017.7.17.로 만료됨에 따라 2017.7.3.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레네부엘만을 2017.7.18.부터 2020.7.17.까지를 임기로하여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였습니다.

회사는 조속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도덕성, 그룹가치 구현 능력, 업무 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이사회는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7 호, 정관 제 39 조 제 2 항 제 7 호)

2017.11.8. 이사회에서는 주주의 계열회사인 하나금융티아이와의 IT 자산 구매계약, UBS AG 와의 IT 서비스 제공의 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정관 제 40 조의 2 제 6 호)

나. 구성(이사)

1) 총괄

회사 이사회의 이사의 수는 총 6 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이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합하여 “비사외이사” 라 한다)와 사외이사로 구분하며, 상임이사는 이사 총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 1 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최소 3 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 제 32 조). 이는 지배구조법 상의 최소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법 제 12 조)

2017 년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7 인의 이사(대표이사를 포함한 3 인의 비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포함한 사외이사 4 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사외이사의 임기는 3 년 이하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1 년 이하입니다. (정관 제 34 조) 단, 사외이사는 회사에서 6 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그 임기가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배구조법 제 6 조)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및 충실성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지배구조법 제 6 조)

회사 주주들 간의 계약에 따라 이사회 의장으로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원중 사내이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2017. 3.27. 개최된 이사회에서 심재우 사외이사를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지배구조법 제 13 조)

2) 구성원

가) 이사회의장

이원중

비사외/상임

대표이사

2015.7.1. 취임

UBS 그룹 아태지역 고객본부 총괄 및 경영실 실장 역임

경영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나) 이사

이원중

비사외/상임

대표이사

김영철

비사외/상임

부사장

2015.4.1. 취임, 2017.3.31. 임기 만료

하나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및 심사그룹 총괄 부행장 역임

경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박종영

비사외/상임

부사장

2017.4.1. 취임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부행장)

경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심재우

사외(선임사외이사)/비상임

2013.6.27. 취임, 2014.3.27. 중임, 2015.3.26. 중임, 2016.3.29. 중임, 2017.3.27. 중임

단국대학교 교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봉연

사외/비상임

2015.3.26. 취임, 2016.3.29. 중임, 2017.3.27. 중임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 부장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조진완

사외/비상임

2017.3.27. 취임

한국뉴욕주립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역임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한동엽

사외/비상임
 2017.3.27. 취임
 하나은행 중앙영업본부장 역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레네부엘만

비사외/비상임
 2014.7.18. 취임, 2017.7.18. 중임
 UBS 자산운용 아태지역 대표
 UBS Wealth Management 홍콩, 글로벌펀드 투자상품부분 대표 역임
 경영위원회

3) 요약

성명	사내/사외/ 상임/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취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기간 (2017.12.말 기준)	담당위원회
이원종	사내/상임	이사회 의장	- 현)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 전)UBS 그룹 아태지역 고객본부 총괄 및 경영실 실장	2015.7.1.	2018.6.30.	29 개월	경영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김영철	사내/상임		- 현)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부사장 - 전)하나은행 심사그룹 총괄 부행장	2015.4.1.	2017.3.31.	20 개월	경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박종영	사내/상임		- 현)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부사장 - 전)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부행장)	2017.4.1.	2018.3.31.	9 개월	경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심재우	사외/비상임	전임사외이사 감사위원 (위원장)	- 현)단국대학교 교수 - 전)미국러거스대학교 교환교수	2013.6.27.	2018 정기주총일	54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봉연	사외/비상임	감사위원	- 현)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 부장 - 전)외환은행 재무기획부	2015.3.26	2018 정기주총일	33 개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조진완	사외/비상임	감사위원 (위원장)	- 현)한국뉴욕주립대학 교수 - 전)고려대학교 교수	2017.3.27	2018 정기주총일	9 개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한동엽	사외/비상임		- 전) 하나은행 중앙영업본부장	2017.3.27	2018 정기주총일	9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레네 부엘만	사내/비상임		- 현) UBS 자산운용 아.태지역 대표 - 전) UBS Wealth Management 투자상품부 문 대표	2014.7.18	2020. 7.17	41 개월	경영위원회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7 년중 총 6 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사의 참석률은 약 85%입니다.
 2017.2.13.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2016 년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배당금지급계획 및 영업보고서 및 이사 보수 한도를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2017.3.27.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17.3.3.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재우, 이봉연, 조진완, 한동엽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심재우, 이봉연, 조진완을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017.

3.27.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추천 후보들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2017.3.31. 임기가 만료될 사내이사 김영철의 후임으로 사내이사 박종영을 선임하였습니다. 2017. 3.27.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이원중, 김영철, (2017.4.1. 이후는 박종영), 레네부엘만으로 경영위원회를, 심재우, 이봉연, 조진완으로 감사위원회를, 이원중, 조진완, 한동엽으로 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원중, 심재우, 한동엽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이봉연, 조진완, 김영철 (2017.4.1. 이후는 박종영)로 위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17.6.8. 이사회에서는 정관 변경 및 2017.7.17. 임기가 만료될 사내이사 레네부엘만의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2017.7.3.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17. 7. 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개정 및 사내이사 레네부엘만의 재선임을 결의하였습니다. 2017.9.18.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주주 하나금융투자(주)가 최대주주 UBS AG 가 보유하고 있는 51%의 회사 지분을 취득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2016.11.8. 이사회에서는 회사가 주주 하나금융투자(주)의 계열회사인 하나금융티아이로부터 전산자산을 구매하는 것과, 주주 UBS AG로부터 전산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2017.12.27. 이사회에서는 위험관리기준개정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위험관리기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동일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 연간 누적액을 금 5 억원을 한도로 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7 년도 제 1 차 이사회: 2017.2.13. 오후 2 시 (안전통지일: 2017.2.6.)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원중	김영철	레네부엘만	조운제	심재우	오재환	이봉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대한의견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2016 년 결산 재무제표, 배당금지금 계획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승인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정기주주총회소집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 년도 제 2 차 이사회: 2017.3.27. 오후 2 시 30 분 (안전통지일: 2017.3.27.)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원중	김영철	레네부엘만	심재우	이봉연	조진완	한동엽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대한의견 (보고안전 없음)	-	-	-	-	-	-	-	
4. 의결안건								

가. 경영위원회 재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감사위원회 재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마. 보수위원회 재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선임사외이사 선임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 년도 제 3 차 이사회: 2017.6.8. 오후 2 시 (안전통지일: 2017.5.31.)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원중	박종영	레네부엘만	심재우	이봉연	조진완	한동엽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대한의견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정관변경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임시주주총회소집 (정관변경 및 사내이사 선임)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 년도 제 4 차 이사회: 2017.9.18. 오후 3 시 (안전통지일: 2017.9.11.)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원중	박종영	레네부엘만	심재우	이봉연	조진완	한동엽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대한의견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주주간 회사 주식 양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 년도 제 5 차 이사회: 2017.11.8. 오후 4 시(안전통지일: 2017.11.1.)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원중	박종영	레네부엘만	심재우	이봉연	조진완	한동엽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대한의견 (보고안전 없음)	-	-	-	-	-	-	-	
4. 의결안건								
가. 하나금융티아이 IT 자산구매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UBS AG IT 서비스제공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 년도 제 6 차 이사회: 2017.12.27. 오후 4 시(안전통지일: 2017.12.20.)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원중	박종영	레네부엘만	심재우	이봉연	조진완	한동엽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대한의견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위험관리기준개정 추진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위험관리기준 제정 추진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동일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 연간 누적액 한도 승인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회사는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부서에 일임하여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당 금융회사의 주요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이사회 규모의 적정성,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경영진 자문·감독 기능 수행, 의사결정에 금융회사의 윤리적 의무 및 사회적 책임사항 반영, 자료 제공의 적시성, 자료의 충실성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평가는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서 위임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회사의 주주인 UBS AG, 하나금융투자(주)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UBS AG에서 지명한 대표이사 후보를 하나금융투자(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인 이원중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제 13 조에 따라,

2017.3.27.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심재우를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심재우 사외이사는 2013년 6월부터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간 협약에 근거하여,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받아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들 및 감사위원 후보들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극적 자격요건, 책임성, 윤리성, 충실성 등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 과정을 거쳐 선택된 사외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였습니다.

나. 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1인을 위원으로 선임,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7%입니다. 사외이사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명	상임.비상임/사외/사내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주요약력
한동엽	비상임.사외	위원장	2017.3.27~2018 정기주총일	하나은행 중앙영업본부장
심재우	비상임.사외	위원	2017.3.27~2018 정기주총일	단국대학교 교수
이원중	상임.사내	위원	2017.3.27~2018 정기주총일	하나유비에스 대표이사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사외이사후보, 대표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 후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소극적 자격요건, 책임성, 윤리성, 충실성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회사의 주주들은 주주간 협약에 근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 후보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대표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 후보에 대한 자격검증을 실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할 대표이사 후보 및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지배구조법에 따라 관련 내부규정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7 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 회 개최되었으며, 기간 중 부의된 결의 안건은 사외이사후보 4 인 및 감사위원후보 3 인에 대한 추천 및 심의 안건이었으며, 위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7 년도 사외이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7.3.3.¹⁾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원종	심재우	이봉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심의)안건				
가. 심재우 사외이사 후보 (UBS AG 주주 추천)	찬성	의결권제한 ²⁾	찬성	가결
나. 이봉연 사외이사 후보 (하나금융투자주주 추천)	찬성	찬성	의결권제한 ²⁾	가결
다. 조진완 사외이사 후보 (UBS AG 주주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한동엽 사외이사 후보 (하나금융투자주주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심재우 감사위원 후보	찬성	의결권제한 ²⁾	찬성	가결
바. 이봉연 감사위원 후보	찬성	찬성	의결권제한 ²⁾	가결
사. 조진완 감사위원 후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2017.3.27. 정기주주총회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개최되었으나, 지배구조법에 따라 감사위원후보도 추천

2) 본인 권으로 가부 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평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 사외이사후보 추천 관련사항

1)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심재우, 이봉연, 조진완, 한동엽

(2) 출생연도

심재우 (1958 년), 이봉연 (1966 년), 조진완 (1962 년), 한동엽 (1961 년)

(3) 출신학교

심재우

미국 뉴욕 브루클린 과학고등학교 졸업 (1977 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생물공학과 학사 (1982 년), 화학공학과 석사 (1984 년), 화학공학과 박사 (1993 년)

이봉연

마산고등학교 졸업 (1985 년),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1992 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1994 년)

조진완

경신고등학교 졸업 (1981 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85 년), 일리노이대학
재무학 석사 (1988 년), 응용수학 석사 (1989 년). 카네기 멜론 대학 경영학 박사
(1995 년, 재무경제학 전공)

한동엽

동북고등학교 졸업 (1980 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984 년)

(4) 경력

심재우

1996.3. ~ 2017.12. 현재: 단국대학교 교수
2007.9. ~ 2011.6.: 세이에셋코리아 감독이사

이봉연

2015.1. ~ 2017.12. 현재: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 부장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2015.1. ~ 2017.12. 현재: (주)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사외이사

조진완

2016.7~2017.12. 현재: 한국뉴욕주립대학 (SUNY Korea) 경영학과장
2014.12~2017.12. 현재: 한국금융산업연구원장
2003.9~2013.8: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2013.12. ~ 2017.12. 현재: 알지자산운용(주) 사외이사

한동엽

2000.1~2015.12: 하나은행 기업고객전담역, 심사역, 지점장, 본부장

(5) 사외이사 경력

심재우

사외이사 기간: 2013 년 6 월부터
활동내역: 이사회 참석 25 회 (참석률: 90%), 위원회 참석 14 회 (참석률 100%)
주요사안: 임원후보,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이봉연

사외이사 기간: 2015 년 3 월부터

활동내역: 이사회 참석 15 회 (참석률: 88%), 위원회 참석 11 회 (참석률 80%)

주요사안: 임원후보,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조진완

사외이사 기간: 2017 년 3 월부터

활동내역: 이사회 참석 6 회 (참석률: 100%), 위원회 참석 8 회 (참석률 100%)

주요사안: 임원보수한도,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한동엽

사외이사 기간: 2017 년 3 월부터

활동내역: 이사회 참석 6 회 (참석률: 100%), 위원회 참석 1 회 (참석률 100%)

주요사안: 임원보수한도,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참석율은 2018 년 정기주주총회일 기준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이원중

2015.7.1 ~ 2017.12.31 현재,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사내이사, 대표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역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와 추천 후보들 간에는 회사의 이사회 활동을 같이 한 것 외에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심재우는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빙그레의
경영자문, 사외이사, 세이에셋코리아 감독이사 등을 역임한 경영관련 전문가
입니다. 회사와의 거래 관계는 없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이봉연은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 부장으로, 금융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와의 거래 관계는 없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조진완은 한국뉴욕주립대학 경영학과 학과장 및 한국금융산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재무경제학 전문가입니다. 회사와의 거래 관계는 없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한동엽은 하나은행 중앙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한 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와의 거래 관계는 없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심재우, 조진완 후보는 회사 주주인 UBS AG, 이봉연, 한동엽 후보는 회사 주주인 하나금융투자(주)가 추천한 후보입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심재우

-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 ②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 ③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이봉연

-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 ②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 ③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조진완

-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한동업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심재우

관련법령: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제 6 조

평가: 관련법령 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이봉연

관련법령: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제 6 조

평가: 관련법령 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조진완

관련법령: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제 6 조

평가: 관련법령 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한동업

관련법령: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제 6 조

평가: 관련법령 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주주간 협약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추후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내부 규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심재우

(가) 전문성

경영 전문가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고도의 윤리성과 이사회 등의 의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이행하는 등 책임성을 갖추었습니다.

(라) 충실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등에 충실히 참석하였습니다.

이봉연

(가) 전문성

금융 전문가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고도의 윤리성과 이사회 등의 의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이행하는 등 책임성을 갖추었습니다.

(라) 충실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등에 충실히 참석하였습니다.

조진완

(가) 전문성

채무 및 경제 전문가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고도의 윤리성과 이사회 등의 의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이행하는 등 책임성을 갖추었습니다.

(라) 충실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등에 충실히 참석하였습니다.

한동업

(가) 전문성

금융 전문가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고도의 윤리성과 이사회 등의 의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이행하는 등 책임성을 갖추었습니다.

(라) 충실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등에 충실히 참석하였습니다.

(4) 본인 소명

본인 심재우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및 충실성을 갖추고 있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사외이사로서의 적극적 요건 및 법적행위능력, 이해상충금지 및 경업 금융사 겸직 제한 요건 등 소극적 요건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본인 이봉연은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및 충실성을 갖추고 있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사외이사로서의 적극적 요건 및 법적행위능력, 이해상충금지 및 경업 금융사 겸직 제한 요건 등 소극적 요건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본인 조진완은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및 충실성을 갖추고 있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사외이사로서의 적극적 요건 및 법적행위능력, 이해상충금지 및 경업 금융사 겸직 제한 요건 등 소극적 요건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본인 한동엽은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및 충실성을 갖추고 있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사외이사로서의 적극적 요건 및 법적행위능력, 이해상충금지 및 경업 금융사 겸직 제한 요건 등 소극적 요건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바) 사외이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심재우, 이봉연, 조진완, 한동엽 4 명의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위하여 2017.3.3. 사외이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후보자들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적극적 요건을 충족시킴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은 참석위원 만장일치¹⁾로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동 회의에서, 조진완, 이봉연, 심재우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조진완 후보는 재무·경제학 박사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교수로 다년간 근무한 경력있으며, 이봉연 후보는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재무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6 조의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1) 후보자 본인 건은 가부 결정에 대한 의결권 행사하지 않음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17년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4명이며 이중 2명이 연임하였으며 내부 평가 결과 연임한 사외이사 모두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 출석율
심재우	2013. 6.27~2018 정기주총일	연임	90%
이봉연	2015. 3.26~2018 정기주총일	연임	88%

- 재임기간 및 참석율은 2018 년 정기주주총회일 기준임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심재우

학력: 미국 뉴욕 부르클린 과학고등학교 졸업(1977),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 생물공학과 학사(1982),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 화학공학과 석사(1984),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 화학공학과 박사(1993)

경력: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1996.3 ~ 현재)

이사회 활동 내역:

사외이사 기간: 2013 년 6 월부터

주요사안: 임원후보추천,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이원종 위원 추천 / UBS AG 추천

법령 상의 요건: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제 6 조 요건 충족

기타 결격 사유 없음

이봉연

학력: 마산고등학교 졸업 (1985),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1992),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1994)

경력: 외환은행 (1994.2 ~ 2014.12),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2015.1~ 현재)

이원종 위원 추천 / 하나금융투자(주) 추천

이사회 활동 내역:

사외이사 기간: 2015 년 3 월부터

주요사안: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법령 상의 요건: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제 6 조 요건 충족

기타 결격 사유 없음

조진완

학력: 경신고등학교 졸업 (1981),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85), 일리노이대학
재무학 석사 (1988), 응용수학 석사 (1989). 카네기 멜론 대학 경영학 박사,
재무경제학 전공(1995)

경력: 한국뉴욕주립대학 (SUNY Korea) 경영학과장 (2016.7~2017.12 현재),
한국금융산업연구원장 (2014.12~2017.12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2003.9~2013.8)

이사회 활동 내역:

사외이사 기간: 2017 년 3 월부터

주요사안: 임원보수한도,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이원종 위원 추천 / UBS AG 추천

법령 상의 요건: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제 6 조 요건 충족

기타 결격 사유 없음

한동엽

학력: 동북고등학교 (1980),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984)

경력: 2000.1~2015.12: 하나은행 기업고객전담역, 심사역, 지점장, 본부장 역임

이원종 위원 추천 / 하나금융투자(주) 추천

이사회 활동 내역:

사외이사 기간: 2017 년 3 월부터

주요사안: 임원보수한도, 결산재무제표, 예산, 배당안 승인

법령 상의 요건: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제 6 조 요건 충족

기타 결격 사유 없음

심재우, 이봉연, 조진완 및 한동엽은 전문성 경력 등에 비추어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업무 수행을 할 충분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추었으며, 법령 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키므로, 사외이사 후보로 적합하다 평가.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향후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해당 내용 없음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해당 내용 없음

바.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해당 내용 없음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제 1 절 지배구조연차보고서, 2. 이사회, 다. 활동내역, 2) 회의개최내역 참조

나) 사외이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7 년도 사외이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¹⁾: 2017.3.3. (안건통지일: 2017.2.27.)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	----------	------

1. 이사 성명	이원종	심재우	이봉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심의)안건				
가. 심재우 사외이사 후보 (UBS AG 주주 추천)	찬성	의결권제한 ²⁾	찬성	가결
나. 이봉연 사외이사 후보 (하나금융투자주주 추천)	찬성	찬성	의결권제한 ²⁾	가결
다. 조진완 사외이사 후보 (UBS AG 주주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한동엽 사외이사 후보 (하나금융투자주주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심재우 감사위원 후보	찬성	의결권제한 ²⁾	찬성	가결
바. 이봉연 감사위원 후보	찬성	찬성	의결권제한 ²⁾	가결
사. 조진완 감사위원 후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17.3. 정기주주총회 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지배구조법에 따라 감사위원도 추천

2) 본인 건으로 가부 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다) 감사위원회

제 2017 년도 제 22 차 감사위원회: 2017.3.6. (서면회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오재환	심재우	이봉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없음)	-	-	-	-
4. 의결안건				
가. 이사회에서 승인된 2016 년 재무제표 등에 대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 2017 년도 제 23 차 감사위원회: 2017.6.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심재우	조진완	이봉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2017 년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보고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없음)	-	-	-	

제 2017 년도 제 24 차 감사위원회: 2017.12.2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심재우	조진완	이봉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2017 년 하반기 내부감사 결과보고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2018 년 내부감사 실시 계획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위험관리위원회

제 2017 년도 제 1 차 위험관리위원회: 2017. 3.27. (안전통지일: 2017.3.27.)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봉연	조진완	김영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
나. 거래상대방 승인절차 보고의 건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	-	-	-

제 2017 년도 제 2 차 위험관리위원회: 2017.6.8. (안전통지일: 2017.6.2.)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봉연	조진완	박종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 해당사항 없음“	-	-	-	-
4. 의결안건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위험관리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위험관리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 2017 년도 제 3 차 위험관리위원회: 2017.9.18. (안전통지일: 2017.9.6.)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봉연	조진완	박종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리스크/F2B 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	-	-	-

제 2017 년도 제 4 차 위험관리위원회: 2017.12.27. (안전통지일: 2017.12.19.)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봉연	조진완	박종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 해당사항 없음 ”	-	-	-	-
4. 의결안건				
가. 위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회사 고유재산으로 자기의 집합투자재산 취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보수위원회

2017 년도 보수위원회: 2017.3.27.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조진완	이원종	한동엽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없음)	-	-	-	
4. 의결(심의)안건				
가. 보수체계 기준 제정: 보수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6 년도 성과보수 및 이연 지급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보수에 관한 2016 년 연차보고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기타 위원회

해당 사항 없음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심재우

사외이사 심재우는 2017 년 중 개최된 총 6 회의 이사회 중 5 회에 참석하였고, 사외이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회와 감사위원회 3 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선임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회사 현황, 회사 운용 펀드 및 관련 시장 상황 등에 대하여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이봉연

사외이사 이봉연은 2017 년 중 개최된 총 6 회의 이사회 모두에 참석하였고, 사외이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회, 감사위원회 3 회, 위험관리위원회 4 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회사 현황, 회사 운용 펀드 및 관련 시장 상황 등에 대하여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 조진완

사외이사 조진완은 2017 년 중 개최된 총 6 회의 이사회 중 5 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2 회, 위험관리위원회 4 회, 보수위원회 1 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회사 현황, 회사 운용 펀드 및 관련 시장 상황 등에 대하여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사외이사 한동엽

사외이사 한동엽은 2017 년 중 개최된 총 6 회의 이사회 중 5 회에 참석하였고, 보수위원회 1 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회사 현황, 회사 운용 펀드 및 관련 시장 상황 등에 대하여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나) 요약

구분 사외이사명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시 간 실적
	개최	참여	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오재환	1	1	2	-	-	-	1	1	1	-	-	-	-	-	-	
심재우	6	5	10	1	1	7	3	3	2	-	-	-	-	-	-	
이봉연	6	6	16	1	1	7	3	3	2	4	4	4	-	-	-	
조진완	5	5	14	-	-	-	2	2	1	4	4	4	1	1	3	
한동엽	5	5	14	-	-	-	-	-	-	-	-	-	1	1	3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회사는 대주주인 UBS 그룹에서 가입한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함께 가입되어 있으며, 그 한도액은 USD150,000,000 입니다.

다. 사외이사 교육 연수

매 이사회 개최 시 자산운용 전반, 시장 동향, 회사의 사업에 대한 보고와 질의 응답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연수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심재우

가)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제 6 에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국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펀드회사에서 펀드 감독 및 국내 회사의 경영 자문을 한 경력이 있으며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소유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지배구조법제 5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제 6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성)	충족	국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펀드회사에서 펀드 감독 및 국내 회사의 경영 자문 (공학박사)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
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 책임감 소유
라.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
마.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지식/실무경험)	충족	글로벌펀드회사 감독이사 및 국내상장회사 경영자문 경력

2) 사외이사 이봉연

가)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제 6 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다년 간 은행에서 영업 업무 및 재무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금융지주회사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소유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지배구조법제 5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제 6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성)	충족	금융전문가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영업 및 재무 업무 담당)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
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 책임감 소유
라.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
마.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지식/실무경험)	충족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영업 및 재무업무 담당, 자산운용회사 사외이사

3) 사외이사 조진완

가)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제 6 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재무 및 경제전문가 교수로서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소유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지배구조법제 5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제 6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성)	충족	재무·경제 전문가 (교수)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
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 책임감 소유
라.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
마.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지식/실무경험)	충족	경영학교수, 금융원구원 원장, 자산운용회사 사외이사

4) 사외이사 한동엽

가)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제 6 조의 에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다년 간 은행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소유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지배구조법제 5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제 6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성)	충족	은행 영업 업무 담당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

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 책임감 소유
라.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
마.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지식/실무경험)	충족	은행 심사 및 영업업무 담당 경력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해당 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되 관련 법에 따라 5년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 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 이사회와 이사회운영위원회(이사회내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에 의한 내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 시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외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2017년 말 현재,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내부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횟수, 업무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 등을 기준으로 내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사외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와 이사회내 위원회 출석률과 참여도 회사 업무의 이해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4인의 사외이사 모두 전문성, 충실성, 기여도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방안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기타	
심재우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	-
이봉연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	-

조진완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	-
한동엽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	-

3) 외부평가

2017 년 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심재우 선임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로서 회사의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회사는 별도의 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심재우

가) 재직기간

약 4 년 6 개월 (2013.6.27. ~ 2018 정기주주총회일)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320 만원	
	기본금	4,320 만원	월 기본금 360 만원 X 12 개월
	상여금	없음	
	기타 수당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없음	
	건강검진 지원	없음	
	차량제공	없음	
	사무실제공	없음	
	기타 편익제공	없음	

2) 사외이사 이봉연

가) 재직기간

약 3 년(2015.3.26. ~ 2018 정기주주총회일)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없음	
	기본금	없음	
	상여금	없음	
	기타 수당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없음	
	건강검진 지원	없음	
	차량제공	없음	
	사무실제공	없음	
	기타 편익제공	없음	

3) 사외이사 조진완

가) 재직기간

약 1 년 (2017.3.27. ~ 2018 정기주주총회일)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32,980,645 원	
	기본금	32,980,645 원	월 기본금 360 만원 X 12 개월 (2017 년 3 월 임기 시작일 ~ 2017 년 12 월말)
	상여금	없음	
	기타 수당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없음	
	건강검진 지원	없음	
	차량제공	없음	
	사무실제공	없음	
	기타 편익제공	없음	

4) 사외이사 한동엽

가) 재직기간

약 1 년(2017.3.27. ~ 2018 정기주주총회일)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32,980,645 원	
	기본금	32,980,645 원	월 기본금 360 만원 X 12 개월 (2017 년 3 월 임기 시작일 ~ 2017 년 12 월말)
	상여금	해당사항 없음	
	기타 수당	해당사항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해당사항 없음	
	건강검진 지원	해당사항 없음	
	차량제공	해당사항 없음	
	사무실제공	해당사항 없음	
	기타 편익제공	해당사항 없음	

재직기간은 2018 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해당 내역 없음

차. 최근 5 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재임기간	담당위원회	직위	주요경력
유장희	2007.07.27.	2012.06.21.	59 개월	감사위(2007.07.-) 사추위(2007.07.-)	감사위원장(2007.07~2012.06)	이화여대 교수
조기욱	2008.06.27.	2011.02.18.	32 개월	감사위(2008.06.-) 사추위(2008.06.-)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황석희	2009.12.01.	2013.06.27.	42 개월	감사위(2009.02.-) 보상위(2009.02.-)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
함성득	2010.03.05.	2013.06.27.	33 개월	보상위(2010.03.-)		고려대 교수
강승원	2011.02.18.	2012.08.24.	18 개월	감사위(2011.02.-) 사추위(2012.08.-)		하나금융지주 상무
조윤제	2012.06.21.	2017.03.27.	54 개월	감사위(2012.06.-) 사추위(2015.03.-) 보수위(2016.03.-)	감사위원장(2012.06~2016.03)	서강대 교수
심재우	2013.06.27.	2018 정기주총일	54 개월	감사위(2013.06.-) 보상위(2013.06.-) 사추위(2016.03.-)	감사위원장 (2017.03 ~2018 정기주총일)	단국대 교수

주재중	2013.06.27.	2014.03.05.	9 개월	감사위(2013.06.~) 사추위(2013.03.~) 임추위 (2017.03.~)		하나금융지주 상무
김진성	2013.06.27.	2014.03.27.	9 개월	보상위(2013.06.~)		하나은행 부행장
변재연	2014.06.27.	2015.03.26	6 개월	감사위(2014.06.~) 사추위(2014.03.~)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장
오재환	2014.03.27.	2017.03.27	36 개월	보상위(2014.06.~) 감사위(2016.03~) 보수위(2016.03~)	감사위원장 (2016.03.~2017.03.)	외환은행 본부장
이봉연	2015.03.26.	2018 정기주총일	36 개월	감사위(2015.03.~) 사추위(2015.03.~) 위험관리위 (2017.03~)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부장
조진완	2017.03.27.	2018 정기주총일	12 개월	감사위 (2017.03.~) 위험관리위(2017.03~) 보수위 (2017.03.~)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고려대 교수 역임
한동엽	2017.03.27.	2018 정기주총일	12 개월	임추위(2017.03.~) 보수위 (2017.03.~)		하나은행 본부장 역임

재직기간은 2018 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을 반영한 내부규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회사는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는 주주간 협약에 따라 최대주주인 UBS AG 로부터 지명 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하나금융투자(주)의 협의를 거쳐 지배구조법 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2) 비상계획

당사는 별도의 비상계획절차를 제정하지 않았지만, 정관 제 37 조 '이사의 직무'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관련법령: 지배구조법 제 5 조

평가: 이원중 대표이사는 지배구조법 제 5 조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자격요건: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32 조 (최고경영자의 자격)

평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32 조에서는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원중 대표이사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20 년 이상 근무한 글로벌 금융전문가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상품본부장 및 마케팅 부분 본부장을 역임하며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여 왔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이익, 공익성 및 건전 경영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자로 평가됩니다.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2017 년 해당 내역 없음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사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향후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지침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해당내역 없음

3) 후보군 현황

해당 내역 없음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별도의 승계계획은 없으나, 주주간 협약에 따라 최대주주인 UBS AG 지명 후보에 대한 관련 법령 상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최고경영자를 선임하여 왔습니다. 추후, 지배구조법 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경영승계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회사는 별도의 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및 적정성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감사위원회는 관계 법령 및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해당 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 412 조)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 402 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들은 2017 년도에 경영진으로부터 3 회에 걸쳐 사업실적, 재무상황, KPI 및 위험통제와 오퍼레이션에 대한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 조, 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나, 2017 년도에 외부감사인의 교체사유가 없어 외부감사인의 교체선임에 대한 승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검토를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7년 3월 6일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을 검토 하였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외감법 시행령 제 7 조) 검토 결과,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이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준법감시인이 수행한 내부통제점검 결과의 중요 내용을 보고받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7년도 제 23 차 감사위원회(2017. 6. 8.)에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2017년 상반기 내부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고, 2017년도 제 24 차 감사위원회(2017.12.27)에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2017년 하반기 내부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았으며, 2017년도 제 24 차 감사위원회(2017.12.27)에서 2018년 연간 내부감사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마)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5 조) 2017년도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사항이 없었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합니다. 또한,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주주간 계약에 따라 3인의 위원 중 2인은 UBS AG가 지명하는 위원이어야 합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오재환	사외	위원장	2016.3.29	2017. 3.27

		(임기만료일까지)		
심재우	사외	위 원 (2017.3.27 까지) 위원장 (2017.3.27 부터)	2015.3.26	2018 정기주총일
이봉연	사외	위 원	2015.3.26	2018 정기주총일
조진완	사외	위 원	2017.3.27	2018 정기주총일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7년에는 총 3 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 부의 안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하였으며,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해 보고받고, 점검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 의안을 감사위원들에게 공유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하여 감사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 다양한 전문적인 배경을 지닌 위원들이 감사위원회에서 활발한 토의가 가능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제 2017 년도 제 22 차 감사위원회: 2017.3.6. (서면회의) (안전통지일: 2017.2.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오재환	심재우	이봉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없음)	-	-	-	-
4. 의결안전				
가. 이사회에서 승인된 2016 년 재무제표 등에 대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 2017 년도 제 23 차 감사위원회: 2017.6.8. (안전 통지일: 2017. 5.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심재우	조진완	이봉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가. 2017 년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보고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전 (없음)	-	-	-	

제 2017 년도 제 24 차 감사위원회: 2017.12.27. (안전 통지일: 2017.12.2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심재우	조진완	이봉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2017 년 하반기 내부감사 결과보고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2018 년 내부감사 실시 계획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감사위원회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 제공여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조직:

부서명	컴플라이언스 & 운영위험관리본부
인 원	4 명

보고 및 지원내용:

일 자	대 상	내 용
2017. 3. 6.	제 22 차 감사위원회	2016 년 재무제표 감사보고
2017. 6. 8.	제 23 차 감사위원회	2017 년 상반기 내부감사결과 보고
2017.12.27.	제 24 차 감사위원회	2017 년 하반기 내부감사결과 보고 및 2018 년 내부 감사 계획 승인

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내위원회로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집합투자재산 및 고유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의 심의·의결 등 위험관리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회사의 위험관리는 위험과 수익간 적절한 균형관계를 달성하고, 회사와 그룹의 평판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종류별로 인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위험관리 전략과 관련하여 UBS 그룹의 위험관리조직 및 정책과 연계, 회사 사업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관리조직의 운영, 위험관리 체계 및 전략을 수립합니다.

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위험관리위원회는 국내외 경제환경, 금융환경 및 회사의 재무상황을 바탕으로하여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는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를 심의·의결합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금융환경의 변화 및 제도변경 등을 반영하여 기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 기타

위험관리위원회는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내위원으로 구성된 리스크 / Front To Back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최현황 및 의사록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 위원)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인 이상 3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합니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일반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이봉연	사외/비상임	위원장	2017.3.27	2018년 정기주주총회일
조진완	사외/비상임	위원	2017.3.27	2018년 정기주주총회일
김영철	상임	위원	2017.3.27	2017.3.31
박종영	상임	위원	2017.4. 1	2018.3.31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당사의 위험관리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2017년에는 총 4회의 위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위원들의 참석률은 100%로 실질적이고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회의 개최 전 의안을 사전에 배포하여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제 2017년도 제 1차 위험관리위원회: 2017. 3.27. (안전통지일: 2017.3.2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봉연	조진완	김영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
나. 거래상대방 승인절차 보고의 건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	-	-	-

제 2017년도 제 2차 위험관리위원회: 2017. 6. 8. (안전통지일: 2017.6.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봉연	조진완	박종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 해당사항 없음“	-	-	-	-
4. 의결안전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위험관리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위험관리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 2017 년도 제 3 차 위험관리위원회: 2017.9.18. (안전통지일: 2017.9.6.)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봉연	조진완	박종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가. 리스크/F2B 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
4. 의결안전				
“해당사항 없음“	-	-	-	-

제 2017 년도 제 4 차 위험관리위원회: 2017.12.27. (안전통지일: 2017.12.19.)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봉연	조진완	박종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 해당사항 없음“	-	-	-	-
4. 의결안전				
가. 위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회사 고유재산으로 자기의 집합투자재산 취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회사는 위원회 개최빈도 및 출석률, 시간의 적정성,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 제공여부 등에 대하여 재고하여 위험관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여 위원회가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조치일자	감독기관	양정구분	귀책사항
------	------	------	------

2016. 6.30	금융감독원	경영유의사항 자율처리필요사항	채권 사전자산배분 절차 위반
------------	-------	--------------------	-----------------

가. 경영유의사항

회사는 가) 채무증권 관련 매매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고 나) 채권 사전자산배분의 적정성 사후점검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내부감사 점검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다) 정기적으로 채권 사전자산배분에 대한 내부감사 실시계획과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조치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습니다.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회사는 2016년 9월 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9월 9일 해당 운용역 3명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습니다.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회사는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의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보수위원회규정'을 제정 하였으며, 2017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3명의 위원 중 2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었고,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보수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거 하여 위원회의 안건, 의사진행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의사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수위원회 규정 제 2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2017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가 재구성되었으며, 총 3인 (조진완, 한동엽, 이원중)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인(조진완, 한동엽)의 위원이 사외이사이고, 조진완 사외이사가 보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어,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기: 2017년 3월 27일 ~ 2018년 정기주주총회일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 력
조진완	위원장	사외: ○, 위험관리: ○	재무경제학박사 (지배구조법시행령제 16 조제 1 항 조건 충족)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경영학) 고려대 교수 역임
한동엽	위원	사외: ○, 위험관리: ×	금융전문가	하나은행 중앙영업본부장 역임
이원중	위원	사외: ×, 위험관리: ×	금융전문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대표이사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조진완	사외	위원장	'17. 3.27.	'18. 정기주주총회일
한동엽	사외	위원	'17. 3.27.	'18. 정기주주총회일
이원중	상임	위원	'15. 7. 1.	'18. 6.30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제 22 조 및 내부규정인 보수위원회규정 제 4 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 ①보수의 결정 및 지급 방식에 관한 사항
- ②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③보수체계의 설계, 운영 및 그 설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④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⑤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포함)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2018 년 2 월 5 일 개최된 2018 년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임직원의 기본급과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와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2018 년 2 월 5 일 개최된 2018 년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2018 년 2 월 5 일 개최된 2018 년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회사는 UBS 그룹에 경영권이 있는 합작법인으로서, 회사의 보수체계는 한국의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UBS 그룹이 설계한 보수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UBS 그룹의 보수체계는 경영성과, 재무건전성, 위험관리, 준법감시 체계 및 관련 제반 규정 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며, 매년 UBS 그룹 보수위원회에서 공식 심의·의결하고 있어, 당사 보수위원회는 그 적법성과 투명성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절차가 적절하다고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연지급은 총 보수금액(기본급과 성과보수의 합)이 CHF300,00 또는 USD300,000 를 초과할 경우 그 대상이 되며, 이연 기간은 3 년~ 5 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시 현금 지급분과 이연 지급분 비율이 6:4 이며, 이연 초기 지급분이 이연 기간별 균등 배분액보다 크지 않게 책정하여, 장기성과와 연계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연지급 대상은 등기임원과 상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정하여 진행합니다. 다만, 등기임원의 경우는 지배구조법상 이연지급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상기 기준금액에 상관없이 성과보수의 일부가 이연됩니다. 그 외, 상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보수위원회에서 이연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심의·의결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규정에 따라 매년 1 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8 년 2 월 5 일 개최된 2018 년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보수위원회는 2018 년 2 월 5 일 개최된 2018 년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체계는 예년과 동일하며,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수 지급 등에 대해서도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회사는 UBS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투명하고 적법하게 설계하고 철저한 관리로 운영하는 보수체계를 한국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위원회는 2017 년 연차보수를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체계 및 운영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회사 내 임직원에게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변동보상(성과보수) 대상자는 전 임직원입니다. 단, 지배구조법은 보수위원회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8년 2월 5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는 2017년도분으로 발생한 변동보상(성과보수) 대상자 중 이연지급이 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임원의 경우는 지배구조법에서 요구하는 이연지급 의무대상이며, 그 외에는 2017년도 성과보수액이 회사의 보수체계에 명시된 이연 기준에 해당되는 직원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2017년 12월말 기준 임원은 2명이며, 보수위원회에서 이연지급 대상자로 정한 직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없습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

분 류	인원수	직 명
임 원	2명	대표이사 사장 (사내이사), 부사장 (사내이사)

10)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 제외)의 결정

해당사항 없음.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 개최일 최소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소집사실을 통지합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 시,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 또는 동시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최된 후 동 위원회 안전과 관련된 추가 권고사항이나 승인사항은 이메일을 포함한 기타 통신 수단에 의하여 토의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위원회에 출석한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의사록으로 입증됩니다. 보수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2) 활동내역 개요

2018 년 2 월 5 일에 제 1 차 보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률은 100% 입니다. 이 보수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보수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회사의 보수체계에 따라서 보수를 집행하였음을 확인, 그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2017 년도 이사보수가 2017 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31 억 원)내에서 집행되었음을 보고하였고, 2018 년 이사보수 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31 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을 2018 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평가년도 기준으로 2017 년도 성과보수 (2018 년 2 월말 지급 예정)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결하였으며, 보수체계연차보고서의 작성과 공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2018 년도 제1 회 보수위원회: 2018. 2. 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진완	이원종	한동엽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 안건 없음)		-	-	-	
	가. 1 호안건: 보수체계 운영의 적정성 및 전년도 보수 보고	찬성	의결권 없음 (이해당사자)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2017 년도 성과보수의 결정 및 지급.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포함)	찬성	의결권 없음 (이해당사자)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	찬성	의결권 없음 (이해당사자)	찬성	가결

4) 평가

회사는 필요할 경우, 보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보수위원회 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보수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 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적시성 등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는 신규 순유입자금 (Net New Money), 신규 순유입자금에 대한 운용보수 (Net New Run Rate), 보너스 차감 전 공헌이익 (Contribution Margin Before Bonus), 시장점유율 등으로 구성된 KPI 달성도에 의해 측정되며, 준법경영 등의 건전성 지표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임원 및 직원의 경우 회사 KPI 달성도, 담당 업무 목표의 달성도, 회사 및 부서에 대한 기여도, 인재관리, 상급자, 동료, 직원 등에 의한 평가 등으로 성과가 측정됩니다.

UBS 그룹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고유의 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모든 임직원에게 대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 평가와 다면평가, 라인매니저 평가로 구성되며, 모든 평가는 계량화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평가 시스템 (Performance Measurement & Management)

정량평가 (Performance Goals): 업무와 관련된 목표를 고객, 조직, 재무, 직무, 리스크 관리 등의 세부항목으로 수립, 평가함. 특히 개별 담당 업무에 따라 맞춤형 리스크 관리 목표를 부여하여 평가함.

정성평가 (Behaviors Goals):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동 양식 및 윤리 의식을 성실성(integrity), 협동심(collaboration), 도전(challenges)항목으로 평가하며, 상벌 및 징계내역 등의 요소도 반영함.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와 조직별 경영목표 달성도, 개인의 평가 결과 및 기여도에 의거하여 개인의 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문화에 기반하여 성과와 역량, 기여도에 따라 개인의 보수를 결정하는 철저한 성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성과보수액 중 60%는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40%는 최소 3년 ~ 5년 동안 이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연된 금액은 펀드 및 주식연계상품 등으로 운용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보유하다가 지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수가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지급 당일에 회사에 고용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있거나, 사직 통보를 한 경우에는 성과보수 전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성과보수액 중 이연 보수액은 3년 ~ 5년간에 걸쳐 이연지급을 하며, 이연 보수액은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 또는 재무성과 미달, 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징계, 손실 발생, 퇴직 사유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조치 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액 결정시 이연보수액이 이연기간과 배분율을 토대로 결정되며 각 지급시점도 결정됩니다. 이연보수의 지급확정은 각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UBS 그룹 보수위원회에서 환수조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한 뒤 이루어집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기본급으로 분류하고,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재량인센티브는 성과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수액 대비 성과보수 비율을 배분하는 특정 기준이나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전체의 성과보수가능액,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 성과 및 평가 등 종합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회사의 재량으로 성과보수액이 결정됩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즉시지급 분은 현금으로, 이연지급 분은 주로, 펀드 및 주식연계상품 등에 투자하여 지급확정시기에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현금으로 보유하여 이연기간동안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018 년 현재 회사는 지배구조변경을 앞두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2 인의 이연지급 대상자 중에서 지배구조변경 이후 UBS AG 소속으로 복귀하는 1 인 외, 나머지 1 인에 대하여는 3 년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 중 약 40%를 이연하여 펀드 및 주식연계상품에 투자하며, 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주식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주요 결정은 매년 그룹 본사 보수위원회에서 검토, 결정하며, 회사의 보수체계에도 동일하게 반영합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액 중 60%는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며, 나머지 40%는 이연지급 됩니다. 이러한 배분은 지배구조법에서 요구하는 배분 비율을 따르고 있으며, 회사의 보수체계에 반영하였습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회사는 직원들의 성과가 기본연봉과 성과급에 연동되는 철저한 성과주의 문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평가 결과와 연계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회사는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임금 체계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직무 가치, 책임 수준, 경력 및 해당 직위의 시장 가치,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요청은 없었습니다. 다만, UBS 그룹에서 전세계적으로 시행하는 보상체계를 회사의 보수체계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성과 투명성은 보장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UBS 그룹은 글로벌 금융회사로서 관련 법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엄격하고 투명한 보수체계를 설계하여 UBS가 사업을 영위하는 전 세계 55개국 65,00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해당 사항 없음.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2017 년도에는 주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해당연도 실제 지급액기준)

(단위: 명, 억원)

구 분	임직원 보수총액 ¹⁾ (A) ²⁾	법인세차감전 순이익(B) ³⁾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A/B)		
전년도 (2016 년)	94.0	143.7	65.4%	85	1.1
당해년도 (2017 년)	87.8	139.3	63%	79	1.1

1) 보수총액에는 성과보수가 포함됨

2)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임.

3)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 이 아닌 t로 기재했음. 해당연도말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는 해당연도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해당연도 실제 지급액 기준)

(단위: 명, 억원)

구 분		임 원 ¹⁾	직 원
전년도 (2016 년)	보수총액 ²⁾	14.6	79.5
	성과보수액	5.5	10.8
당해년도 (2017 년)	보수총액	13.9	73.9
	성과보수액	4.8	8.8

1) 회사 규모상 임원 및 직원의 각 직급별 보수 총액은 개인별 보수 총액이 드러날 수 있어 별도 구분하지 않고 기재,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도 포함되어 있음.

2) 보수총액에 성과보수액이 포함되어 있음.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명, 억원)

구 분		수급자수 ¹⁾	기본급 ²⁾	성과보수액 ³⁾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6 년)	임원	5	9.1	4.6	1.84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17 년)	임원	5	8.3	4.45	1.78
	금융투자업무담당자 ⁴⁾	2017 년도분에 관해 지정된 자가 없음 (이연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1) 해당년도중 6 개월이상 근무한 임원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 2017 년도 해당되는 퇴직임원 및 사외이사 제외

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 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 로 분류

3) 성과보수는 해당년도분으로 발생한 성과보수를 반영하였음. 즉, 2016 년도 성과보수 (2017 년초 지급)는 2016 년에 포함, 2017 년도 성과보수 (2018 년초 지급)는 2017 년에 포함하였음. 기본급은 당해년도 실제 지급분이고, 성과보수는 당해년도분으로 발생, 익년 초에 지급하는 금액 기준임

4)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017 년도분으로 발생한 성과보수가 회사의 이연지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수위원회에서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지정한 자가 없음.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성과 보수액
-----	--------

			현금	주식 ¹⁾	주식연계상품 ²⁾	기타 ³⁾
전년도 (2016 년)	임 원	4.60	2.76		1.84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17 년)	임원	4.45	2.81	-	1.64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1) 주식: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 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 등)으로 평가하여 산정.

2) 주식연계상품: 상기 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식연계상품은 이연기간동안 UBS 그룹 보상부서에서 전담관리하며, 투자 수익/손실, 환율의 영향으로 최종 지급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1) 및 2)의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으로 기재

3) 기타: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이연보수액 ¹⁾		
			지급확정 ²⁾	지급미확정 ²⁾
2015 년	임 원	1.96	-	1.96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전년도 (2016 년)	임 원	3.80	-	3.8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016 년도분에 관해 지정된 자가 없음 (이연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당해년도 (2017 년도)	임원	5.58	0.59	4.99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017 년도분에 관해 지정된 자가 없음 (이연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1) 이연보수액: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 2017 년도말 누적액에는 2015 년도와 2016 년도 발생분 포함.

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 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 으로 구분 기재.

2015 년분과 2016 년분, 2017 년분으로 발생한 이연보수액은 각각 2018 년과 2019, 2020 년부터 지급 시작 예정임. 지급확정분 0.59 억원은 보수체계연차보고서 준비 시점의 예상 금액이며 최종 지급시점에서는 투자손익/환율로 인한 변동이 예상됨. 2017 년도중 6 개월이상 근무한 임원 기준으로 기재.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2015 년	임 원	1.96	-	-	1.96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전년도 (2016 년)	임 원	3.80	-	-	3.80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016 년도분에 관해 지정된 자가 없음 (이연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당해년도 (2017 년)	임 원	5.58	0.14	-	5.44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017 년도분에 관해 지정된 자가 없음 (이연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2016 년 이연보수액에는 2015 년도 이연보수액, 포함. 2017 년도에는 2015 년~2016 년 누적액 포함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억원)

구 분		이연보수액					
			t 기	t-1 기	t-2 기	t-3 기	이전
2015 년	임 원	1.96	1.96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전년도 (2016 년)	임 원	3.80	1.84	1.96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016 년도분에 관해 지정된 자가 없음 (이연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당해년도 (2017 년)	임원	5.58	1.78	1.84	1.96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017 년도분에 관해 지정된 자가 없음 (이연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17 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17 년(t 기) 발생분, 2016 년(t-1 기) 발생분, 2015 년(t-2 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억원)

구 분		이연보수액			직·간접적 조정액 노출된 금액 ⁴⁾
		축소액 ¹⁾	직접적 조정 ²⁾	간접적 조정 ³⁾	
전년도 (2016 년)	임 원	삭감, 환수에 따른 조정은 없으며, 다만, 주가연계상품으로 운용하는 이연 보수액은 지급확정시점에 정확한 평가금액을 알 수 있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016 년도분에 관해 지정된 자가 없음 (이연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당해년도 (2017 년도)	임 원	삭감, 환수에 따른 조정은 없으며, 다만, 주가연계상품으로 운용하는 이연 보수액은 지급확정시점에 정확한 평가금액을 알 수 있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017 년도분에 관해 지정된 자가 없음 (이연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 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 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 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 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명, 억원)

구 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6 년)	임 원	해당사항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당해년도 (2017 년)	임 원	해당사항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첨부 1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하나유비에스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UBS Hana Asset Management Company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 -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에 한함
2.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중개에 한함
3. 집합투자업 - 모든 종류의 집합투자기구
4. 투자자문업무
5. 투자일임업무
6. 콜거래업무
7. 어음매입업무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회사는 제1항의 업무 이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다른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등) 회사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이사회결의로 국내 및 국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되 동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사백만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육백만주

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주권) ①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주권에는 아래의 문구가 영문 및 국문으로 기재된다.

“본 주권에 의하여 표창되는 주식 이전은 정관 및 회사 본점에 비치되어 있는 2007. 5. 11.자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요한다. 이와 같은 승인이 없는 한 주식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주주명부에 기재될 수 없다.”

제9조의2(주식의 양도제한 등) 주주가 그 소유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사전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제10조(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가 그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때에는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그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를 수리하고 절차를 완료한 때에 회사는 그 사실을 기재한 통지서를 주주에게 발송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한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제2항의 청구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외자유치, 긴급한 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기타 경영상의 목적으로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가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주식명의개서등) ①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식사무규정에 따른다.

②회사 명의개서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주식사무취급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주주 등의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 또는 등록질권자 및 그들의 대리인은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주주 또는 등록질권자가 외국에 거주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 가주소 또는 대리인을 정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회사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⑤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회사는 결산기가 끝나는 다음날로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삭제됨>

제4장 주 주 총 회

제21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2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4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사 전원이 유고시에는 출석
주주 중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자가 된다.

제26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
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
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
여야 한다.

제29조의2(성립정족수) 주주총회는 회사의 의결권부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한 주주가
직접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통해 출석한 경우에 성립된다. 본 조의 성립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주주총회의 개최는 그 효력이 없다.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이나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30조의2(특별결의사항) 다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수의 증감 또는 납입자본금의 감소
3.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

4.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양수
5. 합병
6.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7. 기타 한국 상법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
8. 회사의 배당정책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배당 승인
9.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영업의 확장을 포함) 관련법령(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포함)을 준수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자본금의 20%에 달하기까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주 대하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달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사될 수 있는 증권 또는 권리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발행 직후 이러한 증권 또는 권리에 따라 주식이 발행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증권 또는 권리의 조건에 따라 최대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위 제9호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
11.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달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사될 수 있는 증권 또는 권리를 발행하는 경우

제30조의3(주주총회의 진행) 모든 주주총회는 영어로 진행되며, 이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한다. 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배포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준비되어야 한다. 영어본과 한국어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등기를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결의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어본에 따른다.

제31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 이사회

제32조(이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6인 이상으로 한다.

②이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이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합하여 “비사외이사”라 한다)와 사외이사로 구분하며, 상임이사는 이사 총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 1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33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사의 임기) 비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 이하로 하며,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5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대표이사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제37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자문 또는 보좌하며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③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관련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③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되, 매분기마다 적어도 1회 이상의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이사회 의장이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중 1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만약, 이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이

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며, 이사회 의 안건 및 참고자료는 적어도 회의일 7일 전에 한국어와 영어로 각 이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이사회 의 개최장소는 대한민국 서울로 하되 이사회 의 결의로 다른 곳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40조(이사회 의 성립정족수 와 결의방법) ①이사회 는 재적이사 과반수 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이사회 의 결의는 정관이나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의 과반수 의 찬성으로 하되, 적어도 2인 이상 의 비사외이사 가 찬성하여야 한다.

②이사회 는 이사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 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회의를 허용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 는 이사회 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6.21 개정)

③이사회 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0조의2(이사회 의 특별결의사항) 다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 중 2/3 이상 의 찬성 및 비사외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한다.

1. 정관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주총회 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2. 회사 의 배당정책에 대한 일체 의 변경
3. 통상적인 영업과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 5억원 이상 의 자산(또는 이에 대한 지분)의 취득, 매도, 담보설정 기타 처분 또는 해당 사업년도 중 취득, 매도, 담보설정 기타 처분한 자산(또는 이에 대한 지분) 가액 의 총계가 금 20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4. 차입금 의 총액이 금 50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로 차입한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단, 회사 의 영업과 관련하여(영업의 확장을 포함) 관련법령(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포함)을 준수하기 위하여 증자에 갈음한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회사 이외의 제3자를 위한 보증, 담보제공, 채무부담 기타 재무적인 의무의 부담
6. 주주 또는 그 계열사와 체결하는 단일 계약(또는 일련의 관련된 계약)으로서 회사가 수령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금 5억원 이상이거나 그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 또는 이사 또는 이사 의 특수관계인과의 계약
7. DIMCO/DI&S Distribution Agreement 및 DIMCO/Hana Distribution Agreement의 해지, 연장 또는 동 계약 상의 권리의 포기
8. UBS/DIMCO Trademark License Agreement 또는 Hana/DIMCO Trademark License Agreement의 중대한 변경, 그 해지, 연장 또는 동 계약 상의 권리의 포기
9. 회사가 현재 취급하고 있는 상품과 현저하게 다른 성격의 상품을 신규로 도입하는 행위

10. 상품 또는 서비스의 브랜드에 대한 중대한 변경
11. 관련 법령 또는 한국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대한 회계 정책 및 관행의 채택 또는 그 중대한 변경
12. 사업의 범위 또는 성격에 대한 중대한 변화
13. 회사 내부규정의 채택, 변경 또는 폐지(단, 이러한 채택,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원래 본 정관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던 행위가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
14.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설치 또는 동 위원회 규정의 채택(단, 동 위원회가 본 정관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던 행위를 관장하게 되거나 또는 동 규정으로 인하여 원래 본 정관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던 행위가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
15. 주식 양도의 승인
16.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 또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 또는 채무의 가액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 계약(또는 일련의 관련된 계약)의 체결
17. 자회사(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회사의 자본금이 회사 직전 회계연도 말 순자산의 10%를 넘는 경우 또는 자회사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회사의 자본금이 회사 직전 회계연도 말 순자산의 10%를 넘는 경우
18. 회사 주식의 공모,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행위(이와 관련하여 투자은행 또는 재무자문사를 선임하는 행위 또는 관련법령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하여 등록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를 포함함)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이사회의 진행) 모든 이사회 회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한다. 이사회의 의사록 및 이사들에게 배부되는 모든 문서(안건을 포함)는 영어와 한국어로 준비되며, 만약 영어본과 한국어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제42조(위원회) ①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경영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위험관리위원회
5. 보수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이나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2조의2(경영위원회)

- ①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비사외이사 총 3인으로 구성한다.
- ② 경영위원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 및 경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③ 경영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상임이사의 보수는 사전에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관련 법령 및 인사관련 제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4조(상당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당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5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④ 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 중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⑧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제4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

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7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계 산

제48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제3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재무제표의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KOREAN GAAP) 및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 각각 작성된다. 회사의 회계장부는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된다.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승인 공고) ①이사는 제49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제49조 제2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손익계산과 처분) 회사의 손익계산은 매결산기의 총수익으로부터 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순손익금으로 하고 이에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합하여 다음 방법에 따라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 2.기타의 법정적립금
- 3.주주배당금
- 4.임의적립금
- 5.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6.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52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월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8장 보 칙

제53조(세부사항) 회사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시행한다.

제54조(규정의 사항)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나 상법, 기타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외이사후보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는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제1기 사업년도) 당 회사의 제1기 사업년도는 이 회사 성립일로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발기인 주소·성명) 당 회사 발기인의 성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2000년 6월 일

발기인 성 명 : 대한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덕훈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116-81-0599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발기인 성 명 : 이 덕훈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490710-1041319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250 반포APT 71-301호

발기인 성 명 : 한 동직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551020-1030711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899 향촌APT 305-1503호

부 칙(1) 이 정관은 200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정관은 200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정관은 200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정관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정관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정관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제1조 (시행일) 제40조 제2항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제48조는 2013년 4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사업년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회사의 제14기 사업년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8) 이 정관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이 정관은 2017년 7월3일부터 시행한다.

첨부2

지배구조내부규범

2016.07.2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이 규범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경영의 적법성, 투명성,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회사 정관 및 타 내부규정 등과 함께 이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이 규범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계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이 규범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 (제정 및 개폐) 이 규범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개정에 따른 경우나 단순한 용어변경 등 내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규범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 구성원은 6인 이상으로 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 총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4) 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1)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한다.

(2) 이사회 의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며,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7조 (이사의 자격요건) (1)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정직성을 가져야 한다.

(2) 상임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상임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1)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및 충실성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제9조 (이사회 의결권과 책임) (1)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과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중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사항
 3. 이사회 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보고사항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1) 이사는 주주 및 회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사는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의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진다. 단,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11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이전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1.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3년 이하
2. 사외이사: 1년 이하, 단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이사의 퇴임 기준과 절차) (1)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 만료
2. 사직
3.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에서 정한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등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데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를 해임하기로 하는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2) 이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라도 법정수를 결하지 않을 때는 그 보궐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임된 경우, 피선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3조 (이사회 의 소집절차)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관련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되, 매분기마다 적어도 1회 이상의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이사회 의 의장이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중 1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만약, 이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며, 이사회 의 안건 및 참고자료는 적어도 회의일 7일 전에 한국어와 영어로 각 이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이사회 의 개최장소는 대한민국 서울로 하되 이사회 의 결의로 다른 곳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권 의 행사) (1) 이사회 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이사회 결의는 정관이나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적어도 2인 이상의 상임·비상임이사가 찬성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회의를 허용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5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1) 이사회는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의 운영 및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의 운영 및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한다.

(3)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방법을 정하고, 평가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 시에 참고한다.

제3장 이사회 내 위원회

제16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경영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위험관리위원회

(2) 이사회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에 한한다.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제17조 (경영위원회) (1) 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 총 3인으로 구성한다.

(2) 경영위원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 및 경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3) 경영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사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5)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9조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2)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3) 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며, 최대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6) 회사의 준법감시부서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7) 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8) 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그 직무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에 따른다.

제20조 (보수위원회) (1) 보수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2) 보수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3) 보수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보수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보수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보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외이사인 위원의 임기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보수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하며,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7) 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8) 회사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보수 중 성과보수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 할 것
2.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할 것. 다만, 담당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 수준으로 이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작도록 할 것
4.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은 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할 것

(9) 회사는 임원 및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시한다.

(10)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 제외), 사외이사(감사위원 제외), 감사위원, 업무집행책임자, 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등 임원의 유형별 총액(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보수총액)으로 작성한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2.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 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수체계의 주요 특성
3.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가.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 수를 포함한다)
 - 나. 성과보수 금액 및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다.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라.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마.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바.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를 포함함)

(11) 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2)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험관리위원회) (1) 위원회는 2인 이상 3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외이사인 위원의 임기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회사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1)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평가결과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23조 (임원의 범위) 이 규범에서 임원이라 함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총칭한다.

제24조 (등기이사인 임원의 자격요건) 등기이사인 임원의 자격요건은 제7조 (이사의 자격요건)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25조 (등기이사 아닌 임원의 자격요건) (1)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 받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2)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전문적 지식 및 투철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3)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 선임 시 관련 법령상 임원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26조 (임원의 권한과 책임)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대표이사가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가 정한 업무분장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상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회사의 내규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 (임원의 선임) (1) 등기이사인 임원의 선임은 제11조(이사의 선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원 후보로 추천한다.

(4)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임원 후보로 추천한다.

제28조 (임원의 퇴임) (1) 이사인 임원의 퇴임은 제12조에 따른다.

(2)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처리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임기의 만료
2. 사직
3. 회사의 인사규정상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인사관련 제 내규에서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임원으로서 신분유지 및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9조 (임원 및 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임원 및 임원후보자는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 내부 또는 외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제30조 (임원의 성과평가 및 보수) 임원의 (i) 성과에 대한 평가주체·방법·절차·지표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ii) 임원 보수의 구성내역·지급방법 등 보수체계는 인사관련 제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31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업무 담당 지원부서 등은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간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 규정에서 이를 정한다.

제32조 (최고경영자의 자격)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제33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절차 및 공시) (1) 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자문기관 등의 예비후보 추천을 받아 결정하며,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를 선임한다.

(2) 회사는 최고경영자후보 추천 및 선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34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1) 회사는 임원의 임기를 상당기간으로 하고 임원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에 보고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임원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최고경영자의 임기, 역할, 권한 위임 사항, 최고경영자의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영위원회 규정에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16.08.0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배제) 회사의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경우, 제20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한다.

첨부 3

감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 ① 위원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과 적용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3 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이사회, 집행기관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후보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중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5 조(위원장 및 간사)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감사업무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 6 조(감사보조조직)

- ① 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는 위원회의 소속 하에 둔다.
-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1 인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감사업

- 무 담당부서를 두거나, 컴플라이언스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감사업무 담당부서 혹은 컴플라이언스팀은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제 3 장 회 의

제 7 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5 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제 2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에게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권한 및 직무

제 9 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 10 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사의 회계감사
2. 회사 전반의 업무감사
3.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4.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대한 승인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제 11 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보고)

-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1 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감사의 위임)

-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부서장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실시, 및 검사결과 처리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 ② 담당부서장은 전항에서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 9 조와 제 11 조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제 14 조(감사결과 처리) 담당부서장은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2. 규정 또는 제도의 개선
3. 관계직원에 대한 주의, 문책 또는 변상

제 15 조(조치결과 보고)

- ① 피감사부서장 또는 관련부서장은 감사결과 통보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정해진 기일 내에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담당부서장은 감사결과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16 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5 년 10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규정은 2008 년 11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이 규정은 2016 년 9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4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정 2016. 9. 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2조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선임한 2인 이상 3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일반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위원장이 선임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외이사인 위원의 임기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제한 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기 1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각 위원이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사전통지 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및 권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등
 -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8)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관계부서 및 직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 또는 외부의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결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6조 (리스크/Front To Back 위원회) 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리스크/Front To Back 위원회(이하 "리스크/F2B 위원회"라 한다)라는 하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리스크/F2B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리스크/F2B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험관리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의로서 해당 안건을 재심의 또는 재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심의 또는 결의는 위원회의 재심의 또는 재결의로 대체된다.

제7조 (부문별 위험관리) 각 부문별 위험관리는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의사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주관부서) 위원회와 관련된 실무는 위험관리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5

보수위원회 규정

2016. 9. 8.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외이사인 위원의 임기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회의 소집)

-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각 위원에게 회의 최소 1주일전에 소집사실을 통지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및 권한)

- ① 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 방식에 관한 사항
 -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3) 보수체계의 설계, 운영 및 그 설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포함)

- ② 위원회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 회사의 주주가 적용 받는 제반 법규정을 준수한다.

제5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위원회가 개최된 후 동 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추가 권고사항이나 승인사항은 이메일을 포함한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토의 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위원회에 출석한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의사록으로 입증된다.
-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사록의 작성 및 보관)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의사진행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보상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